

박형준 / 3월 / 기초GS+ / 1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5731	25	17	0	0	42	1	0.89%	5	112
515486	24	17	0	0	41	2	1.79%	5	
515491	24	17	0	0	41	2	1.79%	5	
515614	25	15	0	0	40	4	3.57%	4	
515726	26	14	0	0	40	4	3.57%	5	
516079	26	13	0	0	39	6	5.36%	5	
515432	25	13	0	0	38	7	6.25%	4	
515450	22	16	0	0	38	7	6.25%	4	
515457	23	15	0	0	38	7	6.25%	5	
515529	21	17	0	0	38	7	6.25%	5	
515569	24	14	0	0	38	7	6.25%	5	
515335	23	14	0	0	37	12	10.71%	5	
515461	24	13	0	0	37	12	10.71%	4	
515475	22	15	0	0	37	12	10.71%	5	
515539	24	13	0	0	37	12	10.71%	5	
515546	22	15	0	0	37	12	10.71%	5	
515379	23	13	0	0	36	17	15.18%	4	
515382	24	12	0	0	36	17	15.18%	4	
515524	21	15	0	0	36	17	15.18%	6	
515527	22	14	0	0	36	17	15.18%	5	
515549	22	14	0	0	36	17	15.18%	5	
515662	21	15	0	0	36	17	15.18%	5	
515420	24	11	0	0	35	23	20.54%	4	
515462	23	12	0	0	35	23	20.54%	5	
515516	21	14	0	0	35	23	20.54%	5	
515568	22	13	0	0	35	23	20.54%	5	
515658	23	12	0	0	35	23	20.54%	5	
515740	22	13	0	0	35	23	20.54%	6	
515347	21	13	0	0	34	29	25.89%	4	
515354	20	14	0	0	34	29	25.89%	4	
515437	22	12	0	0	34	29	25.89%	5	
515464	21	13	0	0	34	29	25.89%	5	
515470	21	13	0	0	34	29	25.89%	5	
515510	19	15	0	0	34	29	25.89%	5	
515523	21	13	0	0	34	29	25.89%	4	
515531	21	13	0	0	34	29	25.89%	4	
515535	24	10	0	0	34	29	25.89%	4	
516005	19	15	0	0	34	29	25.89%	5	
516047	22	12	0	0	34	29	25.89%	4	
514114	21	12	0	0	33	40	35.71%	5	
515366	22	11	0	0	33	40	35.71%	5	
515393	21	12	0	0	33	40	35.71%	5	
515429	21	12	0	0	33	40	35.71%	5	
515440	20	13	0	0	33	40	35.71%	4	
515446	19	14	0	0	33	40	35.71%	4	
515482	26	7	0	0	33	40	35.71%	6	
515563	20	13	0	0	33	40	35.71%	5	
515685	25	8	0	0	33	40	35.71%	6	
516046	18	15	0	0	33	40	35.71%	6	
514398	20	12	0	0	32	50	44.64%	5	
514504	18	14	0	0	32	50	44.64%	4	
515370	19	13	0	0	32	50	44.64%	5	
515421	20	12	0	0	32	50	44.64%	4	
515423	22	10	0	0	32	50	44.64%	5	
515490	25	7	0	0	32	50	44.64%	4	
515564	22	10	0	0	32	50	44.64%	5	
515579	24	8	0	0	32	50	44.64%	6	
515643	21	11	0	0	32	50	44.64%	5	
515670	19	13	0	0	32	50	44.64%	4	
515844	24	8	0	0	32	50	44.64%	5	
515398	19	12	0	0	31	61	54.46%	4	
515403	24	7	0	0	31	61	54.46%	5	

515458	24	7	0	0	31	61	54.46%	6
515459	18	13	0	0	31	61	54.46%	5
515466	23	8	0	0	31	61	54.46%	5
515481	20	11	0	0	31	61	54.46%	5
515514	20	11	0	0	31	61	54.46%	4
515659	19	12	0	0	31	61	54.46%	5
515947	22	9	0	0	31	61	54.46%	5
515984	22	9	0	0	31	61	54.46%	5
515385	17	13	0	0	30	71	63.39%	4
515447	17	13	0	0	30	71	63.39%	5
515650	21	9	0	0	30	71	63.39%	5
515674	22	8	0	0	30	71	63.39%	6
515913	18	12	0	0	30	71	63.39%	5
515997	20	10	0	0	30	71	63.39%	4
516030	21	9	0	0	30	71	63.39%	6
516035	19	11	0	0	30	71	63.39%	6
516051	19	11	0	0	30	71	63.39%	5
515373	18	11	0	0	29	80	71.43%	4
515479	17	12	0	0	29	80	71.43%	4
515512	16	13	0	0	29	80	71.43%	4
516105	22	7	0	0	29	80	71.43%	4
519401	18	11	0	0	29	80	71.43%	5
515355	19	9	0	0	28	85	75.89%	4
515487	15	13	0	0	28	85	75.89%	5
515492	17	11	0	0	28	85	75.89%	4
515517	18	10	0	0	28	85	75.89%	5
515657	17	11	0	0	28	85	75.89%	4
515739	18	10	0	0	28	85	75.89%	5
516904	20	8	0	0	28	85	75.89%	5
515480	16	11	0	0	27	92	82.14%	5
515548	17	10	0	0	27	92	82.14%	6
515664	18	9	0	0	27	92	82.14%	6
515738	18	9	0	0	27	92	82.14%	5
516023	15	12	0	0	27	92	82.14%	4
515409	22	4	0	0	26	97	86.61%	4
515734	19	7	0	0	26	97	86.61%	5
515679	15	10	0	0	25	99	88.39%	6
516082	15	10	0	0	25	99	88.39%	5
515417	15	9	0	0	24	101	90.18%	4
515378	15	8	0	0	23	102	91.07%	4
515509	23	0	0	0	23	102	91.07%	6
515572	16	7	0	0	23	102	91.07%	4
515519	22	0	0	0	22	105	93.75%	5
515641	8	14	0	0	22	105	93.75%	5
515846	16	6	0	0	22	105	93.75%	5
미가입	18	4	0	0	22	105	93.75%	5
515444	21	0	0	0	21	109	97.32%	5
515468	19	2	0	0	21	109	97.32%	5
515504	17	3	0	0	20	111	99.11%	6
515672	14	0	0	0	14	112	100.00%	5

박형준/3월/기초GS Plus/13회/1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일사부재리와 관련된 총론적인 문제였습니다.</p> <p>각 설문별 배점이 그리 크지 않고 문는바가 명확하여, 다들 분량 및 논점을 잘 캐치하고 채워주셨습니다.</p> <p>따라서 ‘배점에 맞는 분량을 채우고/못 채우고’가 점수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한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이기에 답을 틀리시면 점수를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일사부재리와 관련된 일반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p> <p>이런 쉬운 문제는 다들 분량을 꼭 채워주시기에, 상대적으로 내용이 좋아도 양이 부족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분량을 채워주세요.</p> <p>(2) 설문 2</p> <p>일사부재리 해당 여부와 인용 심결이 부당한지 여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p> <p>이렇게 대놓고 타당한지 묻는 문제는 결론에서 '부당하다.'라고 명확하게 적어서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3) 설문 3</p> <p>일사부재리 실질적 저촉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에 대해 묻는 설문이었습니다.</p> <p>이렇게 리딩 케이스가 출제되는 경우, 최대한 판례를 길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p>	

또한, 사안 포섭에서 결론은 오픈 형식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안정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딩 케이스의 경우 결론까지 판례와 비슷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 저의 경우, 리딩 케이스와 반대로 결론을 내렸던 답안에도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해결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논리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설문 4, 5

일사부재리 여부를 판단해주시고, 본안 판결을 예상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답을 틀리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사부재리 저촉 판단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3. 소결

배점이 적고 쓰라는 것이 명확하여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갈수록 분량과 논점 개치 면에서 실력이 향상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케이스 사안이 그대로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점수 획득을 위해서는 판례를 따라 답을 내주시는 것이 좋고, 혹시 그렇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논리성과 타당성 면에서 답안이 깔끔하고 명쾌한지를 기준으로 공부해주세요.

박형준/3월/기초GS Plus/13회/2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이용침해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p> <p>사안에서 특별히 복잡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고, 단순하게 이용침해의 판단 법리만을 묻고 있으므로, 조문 및 판례에 충실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이용침해의 판단법리는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설 및 이용 침해 판단 법리를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니다.</p> <p>특허법은 민소와는 달리 학설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용침해 논점은 몇 안 되는 학설이 언급되는 논점이기에 학설도 외워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수험생이라면 다들 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대세적인 논점은 똑같이 기재해주시는 것이 안정적인 점수 획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1과 비슷한 논점의 문제였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분량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p> <p>다만, 그래도 배점이 5점이므로 반 페이지 이상은 적어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병의 실시행위는 갑과 을 모두에게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을에게 있어서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써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p> <p>이런 문제의 경우, 갑과 을 모두에게 침해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목차 구성 및 답안 작성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3. 소결

간혹, 목차 제목이 너무 길거나 대 목차만 뽑아주시고 그 이하 내용은 줄글형식으로 기재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 문제처럼, 조치/방법 및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서 그러한 기재 방식은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답안 구성하실 때, 문제가 물어보는 바의 특성에 맞게 목차 구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해주세요.

[문제-1] I. 실문(1)

1. 학습

① 형식증거설, ② 증거등질설, ③ 중요증거설, ④ 정정증거설이 있다.

2. 판단방법 - 취사제

대법원 취사제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어떠한 증거 증명사실 및 증명능력에 해당하리 판단할 때, 심결의 모든 증거 방식 및 심판정기 내용은 구할아라 같은 준칙 (이로 지식을 근거하여 상급을 판단해야 한다) 한다.

3. 증명능력의 의미 - 대법원 취사제

대법원 취사제는 ① 증명능력이 강한 증거내용의 증명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② 이의 항소심결의 결론은 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억하여 같은 증거가 위라는 것으로 표강되다 한다

4. 구체적인 판단기준 - 대법원 취사제

(1) 불결의 저축 문제.

동일사실에 대해 동일한 심판정기에서 이의 항소된 심결의 취사제 항소로 판단하는 것은 이의 심결의 기판이 된 기판 불결의 저축되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불합격하게 위법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2) 불결의 저축 문제.

2회 항소된 심결의 증거는 1회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사실의 증거로 이를 판단하거나, 그 증거 자체는 이의 심결은 변속하게 함은 같은 사실의 증거의 상호이로 이 증거. 항소로 결합해 판단하는 것은 이의 항소심결의 기판이 된 사실의 증거가 되기 않나 사용된다.

도 강도

일사부재리 적용여부 3가지 사례에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타당성 여부를 내기 전에 각 약관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이항항이 타당하다

II 결론(2)

5

~~1. 동일한 증거 여부~~

~~두이 제한한 선행판결 9 (A+B)는 이항 항소심판에서~~

~~1. 동일성과 및 동일 사실 여부~~

~~두은 2과 동일한 항소심판을 청구했다~~

~~1. 동일~~

1. 일사부재리 여부 하기 - 판 제 163조

상호간·처음 항고 및 심판정제에 대해, ~~동일성~~·처음 항고 동일사실·동일종류로 된 같은 심판은

1. 일사부재리 여부 하기 - 판 제 163조

상호간·처음 항고 및 심판정제에 대해, 동일성은 타당후 '처음 항고 동일사실·동일종류로 된 같은 심판은 청구가능하다

2. 동일 심판·사실·증거 여부

두은 2과 동일성에 해당한다 9 (A+B)는 증거, 전분양 기반이 일사부재리를 주장하며, 동일성판은 항소심판으로 일사부재리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

3. 선행판결 증거 여부

두이 제한한 이항 항소심판과 동일한 증거에 대해, 심판판은 해회를 달리하였으므로, 이는 이항 항소심판의 제1회 된 이래로 선행판결로 적용되지 않는다
2회 선행 판판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결론

3



유일한 근거인 선행선 2(A1B')이 증거의 양으로 결합하여 판단된 것으로

㉔ [실용적] 증거 9개 중 핵심성과 다른 결론 내리더라도, 전술한
기타 4 개보다 선행 증거 9개의 양에 비해 선행 선의 양이라 할 수 없다.

㉕ [원인] 관련,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런 사실들, 선행된 사실은 정당하다

IV. 결론

1. 증거가 증명하는 사실 전체 조망 - 判定

특히 관련 사실(사)는 ㉔ [과거] [상황] [상황] 선행된 핵심성과 증거의

전체 조망이 같이 사정 중만 제외된 경우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 선의
변별이 가능하여 '중요 증거'의 해당되고 해당하지 않는 것의 그 변별

가능하게 입증하는 등 문헌 상의 해석을 넘은

㉕ [증거] [증거] [증거] 등 여러 가지 증거는 '중요 증거'의 증명

없이 그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다하게 첨가할 수 없다.

㉖ [증거] 증거 입증된 사실과 증거를 선행 선의 증거를 제외한 경우,

사실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 증거'의 증명

여부 관계 없이 일사불행의 양에 의해 인정되지 않다고 하였다

2. 사실

(1) 선행 선의 적법성 판단

선행 선과 관련 증거가 없는 사실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제외된 경우로,

선행 선의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중요 증거'의 증명과 관계없이

일사불행의 양에 의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하다



(리본안 필드)

인텔리전트(A+B)로 작성한 문서가인 '인텔리전트'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기각을 내려야 한다.

5

V. 결론(5)

1. 새로운 문헌사항이 추가된 경우 - 심사제

대법원 제1회는 ①C와 관련된 - 결사제에 관한 예외] 관련성만에서
추가된 것인 문헌사항에 대해 다른 문헌사항이 추가된 경우, 새로 삽입된
그 자체로 도출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결사제에 관하여 위헌의견
을 내지 않음.

② 문헌 관련 -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한 요건] 심결의 결론적 취지는 별지나
같은 결사제에 제2회나 제3회로 나가면, 같은 통치원이라 생각 되는
부족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반복해서 행하여 유죄판결이 아닌 제2회(리)
영향을 끼쳐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사안

① 심결의 취지

'영세한 거래'의 새로운 문헌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영세한 거래'와
관련하여 위헌 심판이 아니므로, 결사제에 관하여 위헌의견을 내지 않음.

(리본안 필드)

① 영세한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문헌사항이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영세한 거래에 대한 위헌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반하여, 이번 박근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의 기각결정을 번복할만한 유죄판결이 추가된



사유 없으므로, 이와 같이 선형 미발의 우선권이 일단 판례내려야한다

② [결론] 기각결정이 세심하다

(끝)

[문제-2]

I 실문(1)

1. 실시가능

(1) 이항판결 - 3층 제 982

특허발명에서 특허권발권 2 관련된 2 특허발명은 이항하는 경우, 선형권리까지 타격을 받기 조처는 각자의 특허발명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기각판결의 의미 - 취소사결

대법원 취사결은 ① [이항판결의 효과] 특허발명이 선 특허발명을 개량하는 경우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되는데,

② [이항판결의 효과] ^기 이러한 이항판결은 특허발명이 선 특허발명에서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기 선 특허발명에서 요소를 추가 도입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하고, ^{원시} 특허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에서 원시성을 갖추어 있는 경우 인정받을 것이고,

③ [3층 이항판결] 특허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고, 3층 발명은 기항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3) 원시성이 유지되는 경우 - 취소사결

대법원 취사결은 ① 원시성의 특허발명이 주요요건으로 과연 선형으로 유지되는 경우 - 실시예 중 비 특허발명이 원시성을 갖추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새로운 기술적 요건의 추가로 새로운 작용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원시성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

① 2차 발명 ABCD는 1차 발명에 사소한 기술적 개량 C를 추가한 발명으로서

비단, ABCD가 ABC에 대한 전 포함이다 이를 2차 발명이라 하되,

1차 발명에 각 발명자를 2차 발명도 포함 가능하면, 이 발명자가 생략되며, 지명되지 않거나 1차 발명자인 2차 발명 ABCD 발명도 실시할 수 없다

② 2차 발명 전 포함의 경우, 각 발명자를 생략할 수 없다면,

이 발명자가 생략되지 않아 2차 발명도 각 발명자에게 실시 가능하다

2. 4 발명자만 2차 실시할 수 있는 방법

(1) 4 발명자 모두 실시 하라

1차 발명에 모든 발명자는 발명 전 포함의 2차 발명 ABCD를 실시 가능하다

(2) 통상적인 발명권자 - 주에 1382 제1항 2호

① 1차 발명에 4 발명자가 실시하지 않거나, 발명자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② 2차 발명도 발명 ABCD가 1차 발명에 비해 상당한 공헌이 있다

지닌 발명권 가진 발명자가 있는 발명자를 2차 발명도

③ 통상적인 발명권자를 생략할 수 없다.

II 발명자

1. 실시 가능

① 이 발명자가 발명권자이고, 후발 발명자의 실시가 제한되지만, 비발명자

발명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② 그러나, 비발명자라도 발명권자를 발명권자가 발명권이 실시 불가능하다

2. 1차 ABCD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

(1) 발명자



2차 협상 중이, 실시 여부를 알린다.

㉠) 통상적인 협력성 판권 - 주에 1382 제13항

㉡) 1차 주에 1382 (양) 따르 실시 여부를 2에게 아꼈는데,

㉢) 2이 1에게 A항이나 B항을 허가하려 않거나 허락할지

없는지, ㉣) 1은 B항 실시가 필요하다면, 1은 2에게 강제 실시권

부여나 소원을 할 수 있다.

㉤) 11타

㉠) 2가 특허권을 양수하게. ㉡) 현행 판권 1382 중 권한이 아닌 무효사유를

찾아내서 2가 특허를 무효화한다면 가능하게 실시 가능할 것이다.

II 12(3)

1. 실시 가능

3차 협상에서 판권이 아닌, 1이 A항 C항 실시는 1.2 중의 특허권은
침해는 아니며, 1은 2에게 유동하게 1382항은 허락 없이 실시
가능하다.

2. 1이 A항 C항 실시할 수 있는 방법

㉠) 실시권 계약 체결

1은 2로부터 1차에 대한 허락을 받아, 실시권과 판권을 실시 가능하다.

㉡) 권한이 아닌 판권

㉠) 권한이 아닌 판권 1382 중 1이 2 주에 1.2에 무효사유를 찾아내어 2에게
무효시킬 수 있다

㉢) 특히 2의 발명이 1.2에 공개될 수 없다면, A항 B항 통상적이거나

쉽게 발명 가능한 것처럼, 권한이 아닌 무효사유를 찾을 수 있다

특사. 내보내야!!

<문제-1>

I. 서문(1)

1. 일사부재지 의미 (법 163)

누구든지

심판청구권 남용 및 심결 모순 방지를 위해 본인심결 확정 후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해 동일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2. 동일 증거

(1) 학설

① 형식증거설 ② 증거동일성설 ③ 중요증거설 ④ 장애증거설 있다.

(2) 대법원 취지

동일 증거란 증거 내용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그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3) 검토.

① 일사부재지 취지에 비추어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한 증거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② 각 학설의 장점은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용함이
타당하다.



II. 부분(2)

1. 동일사실의미 부합제

일사부재리에서 동일사실이란 타점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부합제는 새로운 부효사유가 추가된 경우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2. 증거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부합제

종전 확정 심결에서 판단된 증거의 해석을 달리하는 등 확정심결의 기분이 된 이유로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3. 사안의 경우

① 지이 면서 선행판결 1 근거로 진보성 부효사유를 주장하며 부효심판 청구해 가과심결을 받았다.

② 같은 같은 부효사유인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고, 증거도 선행판결 1로 동일하므로

③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심판원은 각하심결 해야 한다.

3
부합하다 ✓

III. 부분(3)

1. 동일증거가 아닌 경우 부합제

① 종전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동일 증거라 볼 수 없다.

②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한 증거라도, 심판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사안의 증거로 활용되거나,

③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추가됨. 변경적으로



결정되어 사용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해결

① ~~특~~은 무효심판에서 진정성 위반을 주장하는 바, 동일 증거 ~~의~~
요건까지 충족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아니된다.

② ~~특~~은 선행문헌 2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선행문헌 2는 종전 학정심결을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이며,
선행문헌 1도 사용했다 하더라도 선행문헌 2에 추가적·보충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심판원의 심결은 타당하다.

4

IV. 결론(4)

1. ~~특~~ 특허의 소제

① 종전 무효심판에서 주장된 진정성과 같은 ~~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혀 다른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2. 증거가 전혀 다른 경우 취지

① 동일 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이 동일하거나 거기에 종전
학정심결을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의~~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② 따라서 증거가 전혀 다른 경우, 종전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로 변해야 한다.

3. 검토

일사부재리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바, 증거가 정해 다른 데도 심판을 번복할 수 있다 하여 동일 증거라고 볼다면, 제3자의 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본래 무효로 될 특허가 존속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바, 귀심회가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 ① 변형명헌고는 변형명헌이라 정해 다르므로 동일 증거 아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
- ② 변형명헌으로도 특허권의 존속을 부정할 수 있다면 심판원은 ① 귀심결 내릴 것이다.

V. 직무(5)

1. 동일사실 - 무효사유가 주어진 경우 (귀심회)

- ① 종전 무효심판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라 다른 무효사유 그 자체로 동일사실이라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반하지 않아 후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② 다만 본안심결 관련, 종전 확정 심결에서 판단된 사항과 청구원인이 상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심결을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부재되었는지 여부에서 다른 심결을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2. 사형의 경우

(1) 기재불비 무효사유 - 적용

기재불비는 2의 부형심판에서 주장된 진정성위반과 전혀 다른 무효사유라서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심형문헌 2가 확정심결을 번복할만큼 유력한지와 관계없이 심형문헌 1이 증거 사용되어도 일사부재지 원칙에 변화가 없다.

(2) 진정성 무효사유 - 조력부 적용.

진정성 위반은 종전 확정심결에서 판단된 사항과 상이함에 공동되므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심형문헌 2가 확정심결을 번복할만큼 유력한지 먼저 살펴봐야 하며, 그렇다면 심판원은 본안심결에 나아갈 수 있다.

(3) 본안 - 가각심결.

① 기재불비 ~~위~~로 진정성위반과 관계없이 일사부재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심판원은 본안심결 내릴 수 있다.

②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종전 확정심결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기재불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원은 가각심결 내릴 것이다. [끝]

X
→ 본안

<문제-2>

I. 선택(1)

1. 문제의 소재

이용관계의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한다.

2. 이용관계

(1) 법 98.

등록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선행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실시는 선행발명의 침해인 경우에 성립한다.

(2) 판단기준 사례

1) 무단이용.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구성을 ~~추가~~ 추가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특허발명 내에서 선행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준동이용.

사례는 선행발명과 준동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관계 성립을 인정한다.

3. 사안의 경우 - 이용관계 여부

주요 특허발명은 특허 선행발명 A+B에 새로운 구성 C를 추가한 것으로서, 주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되, 주 발명의 일체성이 유지된다면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4. 2의 조치

(1) 실시허락

甲 발명 A+B 실시 허락 협상을 한다.

(2) 통상실시권 허락 소판 청구 (法 138)

法 98의 이음관계가 성립한 경우 특허권자나 합리 실패 시 통상실시권허락소판 (法 138) 청구 가능하다. 이때 2의 발명은 甲 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어야 한다.

138D

(3) 재정청구 (法 107)

반약 甲이 A+B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 실시하는 경우 등 재정청구 가능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

(4) 특허권 소진

甲으로부터 A+B를 구매하여 A+B+C를 실시하는 경우 A+B에 대한 甲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해 소진~~되~~되어 2의 실시가 가능하다.

(5) 기타 조치

누가 선행무언 조치 등을 통하여 甲 특허의 무효사유 조부를 받는다.

양

(6) 결론

반약 위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다면, 2의 A+B+C의 실시도 甲 특허권 침해가 되어 2은 실시 불가하다.

Good

II. 변경(2)

1. **부 실시거부**

부은 A+B를 실시할 수 있다, A+B+C의 실시는 Z특허권 권기범위에 속하므로 실시할 수 없다.

2. **부의 조치**

(1) 실시허락 요청

Z의 합의를 통해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동등실시권허락심판(法138) - 크로스 라이선스

138②

부이 Z의 자신의 특허 실시를 허락한 경우, 시장에서 부의 실시를 위해 부도 Z의 특허발명 실시 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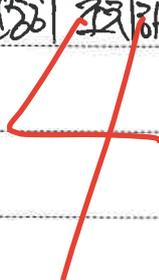
(3) 영이론.

Z로부터 적법하게 A+B+C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Z특허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영되어 부은 A+B+C를 실시할 수 있다.

(4) Z 무효사유 조사 - 주의 필요.

부가 선행특허 조사 등을 통해 Z의 특허효력을 발견하여 무효심판으로 면제되면 부은 A+B+C 자유사용 가능하다.

단, 부의 A+B의 무효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신중히 조치해야 한다



II. 선행(9)

1. 원 선행자 - 2

원인은 A+B나 A+B+C의 특허권자나 정당 실시권자로 아닌 제3자이므로 그의 A+B+C 실시권 무과 2 특허권을 동시에 침해한다.

2. 원의 권리

(1) 甲. 2 권의 모든 침해

甲. 2 권의 권리를 통해 각 특허권에 실시권 비정한다.

(2) 특허권 양수

甲. 2 특허권을 모두 양수하여 실시한다.

(3) 재정당사 (법 107)

甲과 2 중 특허가 재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정당사한다.

(4) 선이권

2이 A+B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A+B+C를 구마하여 사용한다.

(5) 기타 권리

부가선행권한 기타 등을 통해 甲. 2 특허의 허가를 받거나 자유사용 가능토록 한다.

또한 침해 회피책에 의해 실시하는 방안 고려해 본다.

복사, 변경, 동양!!
<이해해백>

[20]

